

2020년도 제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43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건(안전번호 제2020-7552호~756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7552호는 블로그에서 만화책 스캔본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553호, 7554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게시물을 스크랩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20-7555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556호는 웹하드에서 영상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

한 35건(안건번호 제2020-1312호~134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4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개 안건(3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4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성명, 6쪽의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내용, 10쪽의 저작물명, 10쪽~11쪽의 게시물 내용, 12쪽의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21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해당 부분은 민원 신고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함.
- B 위원: 같은 생각임.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해당 쪽수만 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임.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같은 생각임. 다만 심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전차 회의록 확인 시 비식별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취소선을 긋는 방안을 제안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성명, 게시물 제목, 민원 신고 내용,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쪽~21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7552호~7567호

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46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5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15. 5. 9. '☆☆☆☆☆ ○○○'이라는 제목으로 만화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 해당 만화 복제물은 만화책을 스캔한 jpg.파일 형태임. 만화책의 표지까지 스캔하여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만화 '☆☆☆☆☆' 9권은 2009. 9. 15. 출판되었고, 도서 정가는 4,200원임.

- B 위원: 만화책 자체를 한 장 한 장씩 스캔한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5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안건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5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20., '△△△△△△△△△△△△△△△△△△'은 2018. 8. 8., '□□□□□□□□□□□□'는 2020. 2. 13. 국내에서 각각 개봉하였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7553호~755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B 위원: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 A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553호~755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55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우리나라 영화 '택사운전사'를 140P에 판매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755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하고 있음.

- C 위원: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5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557~756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557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해당 영화의 원작은 브라질 영화임.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7557호 게시자 이름이 ‘알수없음’인 이유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모바일 웹하드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서비스별로 게시자가 안 찍히는 경우가 있음. 그 경우 시스템에는 게시자 정보에 ‘알수없음’으로 처리됨. 실제로는 로그인하면 게시자 이름이 보임.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58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안건번호 제2020-7557호와 다른 모바일 웹하드에서 20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조조 래빗'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65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 자막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함.

(영화 '작은 아씨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567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11.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7557~756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비교적 최근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같은 생각임.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

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557~756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552호~756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면부터 22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12호~1346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나머지 34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4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개 안전(3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1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